

#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증서진부확인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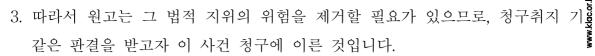
## 청 구 취 지

- 1.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〇〇. 〇. 〇〇.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조된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의 액면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 2. 그런데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 1매는 소외 ◈◈◈가 20 ○○. ○. ○.경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뒤 원고로 행세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진술서

1. 갑 제2호증

녹취서

1. 갑 제3호증

약속어음사본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ㅇㅇ지방법원 귀중



# 약속어음목록

액면금액 : 금 5,000,000원

만 기:2000.0.00.

지급지 :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 ○○은행 ○○지점

발행일 : 20 ○ ○. ○. ○.

발행지 : 서울특별시

발행인 : ○○○(원고)

수취인 : ◇◇◇(피고)

<b>★ 》 대한법률구조공단</b>	
	<b>//</b>
হ	
း	
일람표) <b>※</b>	
H 표	
_	DATOLS MANUFACTOR STORY

	소멸시효		
관할법원	※ 아래(1)참조   ○○년(☞소멸시효일람표) 장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장   기 간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복 절 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서도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		
	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		
	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		
	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		
	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임(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 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		
	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		
기 타	는 서면 은 그 기재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		
	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진부확인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		
	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		
	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		
	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임(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		
	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		
	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